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공정위 소관 「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(조례·규칙) 개선율」이 행정안전부 추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 지표로 확정('19.9.30.)됨에 따라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조문을 개정하여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촉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급수공사 시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하는 조문 삭제(안 제10조제5항)

(현행)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.

(개정)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
「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무총리 훈령 제730호)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굴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써 경상북도내 시·군 중 조례개정이 필요한 6개 시·군 중 구미시가 포함되어 있고, 「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(조례·규칙) 개선율」이 행정안전부 추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 지표로 확정('19.9.30.) 됨에 따라 사업활동 자율성 제고 및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